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회)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 근거 마련

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용조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이관·정비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및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
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48